

대법원 2002. 5. 17 선고 2001다34133 판결 [건물명도]

참 조 조 문

[1]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, 제173조

재 판 경 과

대법원 2002. 5. 17 선고 2001다34133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01. 3. 23 선고 2000나13204 판결

전 문

【원고,피상고인】 김AA

【피고,상고인】 이BA

【원심판결】 수원지법 2001. 3. 23. 선고 2000나13204 판결

주 문

상고를 각하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이유

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.

기록에 의하면, 원심법원은, 피고가 선고기일소환장 등을 적법히 송달받아 온 주소지로 발송한 원심판결정본이 장기폐문부재라는 사유로 반송되자 2001. 4. 13. 등기우편으로 이를 피고에게 발송하였는데, 피고는 2001. 5. 10.에서야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.

송달받을 자의 송달장소가 폐문되어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(교부송달이나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)이 모두 부재중인 때에는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우편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장기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원심판결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그 송달을 시행한 것은 적법하고(대법원 1990. 11. 28. 자 90마914 결정 등 참조), 피고는 등기우편 발송일인 2001. 4. 13. 원심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(민사소송법 제174조), 이 사건 추완상고장은 그로부터 적법한 상고기간인 2주일을 초과하여 제출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.

피고는, 원심법원이 판결정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당시 자신은 주소지를 떠나 ○○도 양구에서 식당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었고, 원심판결정본을 수령한 동거인인 조카 이CA(1986. 8. 1.생)이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2001. 5. 4.에 비로소 그 송달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추완상고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은 "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다."고 규정하고 있는바, 여기서 말하는 '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'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인바(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6다카2224 판결, 1999. 8. 20. 선고 99다20971 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주장하는 추완사유는 자신이 임의로 주거지를 떠나 있었다는 것이거나 적법한 수령권자에 해당하는 동거인이 판결정본을 수령하고도 이를 피고에게 전해 주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'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'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.

결국, 이 사건 상고는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

못하였고,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.

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손지열(재판장) 조무제 유지담(주심) 강신욱